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외사업장에서의 전략기술 보호조치 실시의무 규정〉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04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해외사업장에서의 전략기술 보호조치 실시의무 규정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7.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음. 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하도록 부작용을 낳아 국내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외사업장에서의 전략기술 보호조치 실시의무 규정

(안 제14조제7·8항 및 제50조제5항)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4조제7·8항), 이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전략기술보유자는 해당 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해외사업장에서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u>

현행	개정안
⑦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지정 절차, 제4항에 따른 계약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벌칙) ①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 -----계 약과 제7항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의 기준-- ----- -----. 제50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전 략기술의 유출 방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에 대한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도체 기업의 재고, 수출, 판매정보와 같은 영업비밀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해외사업장이 속한 국가의 정부 및 기관 등에 의한 전략기술 유출 위험이 대두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기술보유자의 보호구역 설정, 전략기술 취급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 등의 보호조치 규정¹⁾에 더하여,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제1항²⁾은 전략기술의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7조³⁾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사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7조(수출 승인 신청 대상)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기업 등에 매각, 이전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 매각
2. 외국기업 등에 자료전송, 양도, 기술지도, 위탁연구, 위탁생산, 인력의장기과건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이전
3. 외국기관 등에 실질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이전·공유를 위해 진행되는 세미나, 강의, 학술발표 등 특정기관과 기술 협력이나 정보 교류
4.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외국기업 등과의 연구 및 공동연구 참여(외국기업 등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 수행하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를 포함)
5.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을 허락하면서 관련 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술의 동반 이전

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기술 이전·외국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바, 동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4조제2항⁴⁾ 및 제12조⁵⁾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음.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 제14조⁶⁾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⁷⁾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
6.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 양수인 또는 실시권자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의 이전
 7.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8.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해외 인증, 인·허가를 위한 기술자료 제공
 9.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10.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열람·사용 등의 허용
 11. 기존 수출 승인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은 해외 법인이 신축 사업장(공장)으로의 기술 재이전
 12. 위 1호에서 11호 외의 다른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행위
- 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략)
- ⑥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6)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후략)
- 7)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23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관리
 4.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6.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있으므로,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여부와 관계없이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는 현행 법령을 통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전략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전체적인 체계 내에서 특정 유형의 의무(외국정부로부터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현행 시행령 및 지침 등 하위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규정 체계에서 다소 이질적으로 규정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동 개정안의 반영 여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② “보호조치”에 대한 위임

개정안은 해외사업장에서 외국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한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기술보유자가 이행해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전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와 같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7.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반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내용 중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벌칙 규정

안 제50조제5항의 벌칙 규정은 개정안에 따른 보호조치 이행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⁸⁾

다만, 보호조치 이행의무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의무 위반 시 개정안과 같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형벌인 징역형 또는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할지, 또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형식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은 제14조에 따른 보호조치(예 : 보호구역의 설정·출입 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이행의무 위반 전체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안 제14조제7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위반 시에만 벌칙을 규정

8) 한편, 외국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수출승인 등을 받지 않고 전략기술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5호에 따른 무허가수출에 따른 기술유출행위로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최대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하는 경우 제재의 형평성 및 법 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호조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위반 전반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벌칙을 규정할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④ 관계부처 등의 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규정상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사업장이 전략기술을 보유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둔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 기관에 기술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수출 승인 대상에 해당하여 기술보호조치가 완비된 경우에만 이를 승인하고 있으므로 외국 정부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개정실익이 없어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한편, 현재 미국에서 보조금 수령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주로 시설투자 및 고용에 대한 자료이며, 기술정보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0